

建築士 試驗制度 改善에 관한 討論會

본 협회에서는 지난 3월 6일 본 협회 대강당에서 『건축사시험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현행의 시험규정은 시대조류에 뒤떨어진 제도적 모순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개최된 이날 토론회는 학계, 업계, 관계 공무원 등 관련인사가 자리를 메운 가운데 전형관리 및 운영, 시험자격개선 및 수습기간 신설,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의 개선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서울대 명예교수 金熙春씨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의 중점 토론 내용은, 제 1 과제 전형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는 건축사사무소에서 주·아로 근무하다보면 시험준비가 어려워 사무소를 그만두고 시험공부나 해야 합격을 하는 현실정으로,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보다는 행정관서나 기타 학원에 다니며 공부하는 즉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사람의 합격률이 높은 것은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다. 갑자기 공부하는 사람보다는 실무에서 꾸준히 실력을 갈고 닦는 사람이 합격할 수 있도록 시험의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

제 2 과제 응시자격개선 및 수습기간 신설에 있어서는 건축사자격시험 기간을 현재 대학졸업후 5년에서 2년으로 하고 나머지 3년은 현장 수련을 반도록 하자는 의견과 대학원 경력의 2등급 산정에 대하여는 좀더 깊이 설계공부를 하겠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등급의 책정의 모순이 있다.

건축사자격취득후 2년의 수련기간은 제도적인 관리가 요구되므로 자유로운 창작활동에 막여주는 것과, 어느정도의 수련을 쌓은 후 사무소 개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토론이 있었다.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의 개선은 실기시험의 예고제를 없애는 방법과 필기시험에서 과목을 줄이고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는 3번정도의 실기시험 응시자격 유효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과 영어시험 과목의 필요성에 대하여 국제화시대에 맞추어 절실히 요구되나, 응시자의 각기 다른 입장으로 채택의 어려움이 노정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각과제별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 과제 발표자 / 李光魯 (서울대교수)

전형관리 및 운영

우리나라에서 건축사법이 시행된지도 어언 20여년이 지나서 건축사들의 지위가 사회적으로 보장받고 동시에 건축사 자신들의 질적향상도 가져 왔으며 70년대와 80년대의 우리나라 건축문화 창달에 다대한 기여를 하였음은 공지의 사실로서 '88 서울 올림 대회를 성공리에 치를 수 있었고 오늘날과 같이 전국적으로 훌륭한 건축물들이 도시를 뛰어 넘은 것은 오로지 건축사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장담 할 수 있겠다.

그런데 그동안 시행하여 온 건축사시험에 대하여 그 제도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최근 건축계에선 반성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서 1990년대를 맞이하게 된 시점에서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으며 모종의 제도적 조치가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본다.

우선 본 토론회의 제1과제를 위한 문제 제기로서 현행 건축사시험에 있어서 그 시험문제가 과연 어느 수준에 있으며 바람직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한 주관식문제에 대한 채점방식이 옳은 것인지? 등에 대한 의구심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설계시험에 있어서 그 문제 출제가 응시자의 설계능력 측정에 적합하고 공정을 기할 수 있겠는가?

다음에 건축사시험에 합격하고 낸을 때 그 후 건축사에 대한 사후보장과 인재발굴 및 활용방안은 어떻게 해야 하나? 등에 대한 의문점이 일어나는 현실상황이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로서 매년 실시하는 건축사시험을 운영하는 체제와 방법등이 전적으로 건설부 주도하에 관위주로 치루어져 왔다. 그 방식을 잠깐 살펴보면 매년 건축사 출제위원회가 위촉되며 이분들의 대부분이 건축공학과 교수들로서 당년에 위촉 임명되고 한정된 짧은 시간내에 출제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 중 몇몇 위원들이 출제문제 선정위원회가 되어 시험전일에

격리상태에서 출제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후 별도 위촉된 채점위원이 채점을 하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고 공정하게 시행됨으로써 그동안 그다지 큰 물의 없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점은 끄집어 내어 본다면 건축에 대한 실무를 하지 못하는 대학교수들이 과연 얼마나 현실에 맞는 출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채점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객관적인 건축계의 의구심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매년 계속되는 행사이고 보면 해마다 건축사시험위원을 전원 교체한다는 것은 인재확보난과 사업의 경험등에 대한 면을 고려해 볼 때 매우 힘든 것으로, 경우에 따라선 동일인이 수년간에 걸쳐서 위원 위촉이 되는 경우도 있어 대학교수들을 위원으로 위촉함에 있어서 본의 아니게 어느 특정학교에서만 계속적으로 위촉되게 되는 경우가 생겨 이것 역시 객관적인 입장에서 불평을 가질 소지가 있다고 본다.

또한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위원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땐 어느 전문분야의 권위자라고

하면 오늘날 공사장에 매우 바쁜 일정에
얽매이게 되어있기 때문에 단기간내에
시험문제를 작성한다는 것이 깊은 연구없이
출제하는 결과를 낳게 한다. 또한 채점 역시
집중적으로 시간을 충분히 잡고 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소홀히 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과거의 건축사시험위원회들의
솔직한 견해인 것이다.

보다 현실적인 큰 문제는 건축사시험에
응시코자하는 건축인들은 대학졸업후
5년이상 실무를 익히고 난 연후라야 되는데
건축사사무소에서 주야로 열심히 설계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건축사시험공부를 별도로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시험문제가 실무와는
동떨어진 그야말로 학구적인 냄새가 풍기는
것이 출제되니 낙방하는게 일쑤이고 오히려
실무경험 없이 재수생 과외공부 하는 것 같아
오직 참고도서에 의거해서 집중적으로
시험공부 하는 요령파가 합격률이 높다는
것이다.

다음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의
건축사사무소에서 수련을 쌓고 있다가 여러
편의를 입고서 일단 건축사시험에 합격만
되면 즉시로 독립한다고 나가 버리니, 물론
양자 책임이 있겠지만 기존의
건축사사무소에선 전도유망한 청년 건축인이
도중 퇴사해 버려 그 사무소에선 손해가
막심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더우기
본인으로서도 이제부터가 건축가로서
실제경험을 쌓고 더욱더 분발하여 열심히
일해서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수련을
쌓아야 할 때에, 소장으로 독립하고
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현실은 우리나라
건축계의 장래를 위해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말한 것은 이것이 제도의
잘못으로 돌리긴 어렵지만 단지 사회의
일면이라고 보아 넘기기에도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본인은 생각한다. 어찌하여
건축사사무소에서 열심히 일하고 실무를
익힌 사람 보다도 대학교 입시준비와 같은
공부를 한 사람들에게 유리하단 말인가?
여기서 혹자는 건축사시험위원회들의 과반수
이상은 현업에 종사하는 건축사이어야 하지
대학교수들만으로는 안되겠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왜 건축사시험에 합격하자 마자 자기가
근무하던 건축사사무소를 박차고 나가서
소규모나마 독립된 사무실을 열어야

建築士 試験制度 改善에 관한討論會

1990. 3. 6 大韓建築士協會



하는가? 이것에 대하여선 기존의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선배 건축사들의
책임도 재고해 보아야 하겠다.

여하튼 현재 우리나라 건축설계도서의
질이 저하되는 하나의 큰 이유가 이 점에
있다고 본인은 본다.

이제 우리나라 건축사법시행령에서 본
토론에 해당하는 조항을 들어 보면

제13조 「건축사위원회」시험과 건축사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건축사 위원회」를 둔다.

제14조 「구성 및 위원의 임기」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7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건설부 차관이 된다.

3)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건설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4)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차기
시험시행 공고일의 전일 까지로 한다.

제1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험의 출제 및 채점에 관한 사항

2) 시험의 합격과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학력 및
경력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건설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등으로 되어 있다.

다음 우리와 매우 유사한 제도를 갖는
일본에 대해서 살펴 보면 일본에서도
건축사심사회라고 부르는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비상근 위원들로서 구성되고
시험위원은 별도로 구성토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와 다르다고 보겠다. 물론
시험위원은 건축 각과목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갖고 시험위원으로서 품격을
갖춘 자로서 하기로 하고

중앙건축사심사회의 사무는 건설성
주택국에서 관장토록 되어있다.

상술한바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건설부 산하에 건축사시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한다.

1) 본 위원회는 상설기관으로서 각종
건축시험문제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하고 그
결과를 건축사위원회에 제출토록 해서
건축사시험을 시행토록 한다.

2) 특히 설계문제를 출제함에 있어서는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건축사들의 관여가
있어야 한다.

3) 본 관리위원회는 상설기관으로서
건설부 당국과 건축사협회의 자문기관이다.

4) 본 관리위원회의 구성은 건축사와
건축학전공 대학교수들로서 구성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기에는 건축의
각 전문분야에 대한 통계자료가 당시
비치되어 있고 운영에 있어서 최신 디자인과
기술에 대한 정보수집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우리나라 건축문화와 기술이 세계의 발전에
뒤지지 않도록 하는 임무를 다할 것이고 기히
합격된 건축사들에게 대한 재훈련계획등의
문제도 다루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

특히 본위원회에서 작성된 시험문제는
전부 온행식으로 비축되고 비밀이
유지되도록 하고 「건축사 위원회」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문제 하나
하나에 대한 정확성과 객관성이 과학적으로
구명되어야 할 것이다.

주관식문제에 있어서는 그 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지도 작성 되어서 채점에 공정을
기하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설 자문기관의 설치를 위하여는
법적인 뒷받침과 아울러 운영·경영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겠으며 또한 자체내에서의
연구에 대한 자율성과 아울러 구성원의
자세와 질이 문제가 될 것이고 비밀유지에
대한 장치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즉, 건축사시험제도를 세계 어느 나라
보다도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질 높고
창의적인 건축사들의 탄생을 위하여서는 그
제도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한 조치가 이
시기에 내려져야 할 것이다.

응시자격 개선 및 수련기간 신설

건축사법 제13조(자격시험 내용의 시행)에서 “건축사의 자격시험은 설계 및 공사감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관하여 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건축설계란 설계자의 예술적인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주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위한 편리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비롯하여 건축물의 미적인 조형과 편리하고 정서적인 내외공간을 창출해 내기 위한 “표현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 설계를 시행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지식과 표현력 그리고 건설을 위한 실현수단으로 기술이 동원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술한 법의 규정에서 “지식과 기술”에 관하여라고만 표현된 내용에 대하여는 아쉬움을 두고 본 주제내용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본 주제에서는 건축사시험 중 응시자격과 경력산정기준 그리고 합격후의 실무수련기간 신설과 그 결과 확인을 위한 면접시험제도를 신설하여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내용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우리들 주변에서 가까이 볼 수 있는 일부 합격자들의 합격당시의 능력정도와 경력 그리고 초기 사무소개설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 등은 건축사들의 사회적역할을 원만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1) 응시자격 개선

현행 건축사법 제3장 시험중 응시자격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4조[응시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건설부장관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력이 있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차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1980. 1. 4단서 신설)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5년 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가진 자(1982. 4. 3본호 개정)

2.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7년 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1984. 12. 31. 본호 개정)
3.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1984. 12. 31. 본호 개정)
4.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14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
5. 삭제(1982. 4. 3)

이 규정에서는 1차시험 응시자격을 대졸 후 5년을 규준하였으며 그 외 각학력별·경력별로 순차적으로 경력년한을 규정하였으며, 제1호중에서는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가진 자로, 제2·3호에서는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 되어 있으며 제4호에서는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라고 되어있다. 1차 시험응시자격을 대졸 후 5년으로 규준한 것은 건축사자격이 충분한 실무경험을 요구하고 있으며, 2차시험시기에 맞추어 수시로 개정되어나가는 건축법이나 새로운 학설 그리고 시공기법등의 발전된 시점에 맞추어 시행하며 앞으로 고려될 수 있는 1차시험합격의 일정년한 유효기간 설정등을 고려한다면 더욱 2차시험시기에 맞추어 시행하는 것이 좋으며

건축기술사자격의 응시자격이 7년인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앞으로 언급될 건축사자격시험 합격후 2년간의 수련기간 신설후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는 면허를 준다면 건축관련업무중 유사업종과도 자격기준을 맞출 수 있으므로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4항의 규정에 의한 무학자인 경우에도 14년간의 경력후 응시자격을 준것을 학업과정에서 전공을 잘못택했던 자나 불행하게도 대학 또는 공고과정에 이르기까지의 학업을 받지 못한 자에게까지 응시자격을 준 것은 광범위하게

건축사로서의 적격자를 찾아내는데에 인색하지 아니하되 시험에서 그 소질과 인품 그리고 실력을 가려내기만 한다면 조금도 문제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각호에서 “건축에 관한”이라고 규정하여 “설계감리” 업무와는 성격이 전혀다르며 그 업종에 별도의 자격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이나 “행정”등 업무까지도 구분없이 “설계감리”와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하게 하였음은 당연히 수정되어야 한다고 사려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시한다.

수정안(제1항의 경우)

…5년이상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업무에 종사한 자이거나, 동법시행령 제12조 및 별표2(앞으로 수정될 경우의 경력인정규준)에 의한 등급분류 경력에 달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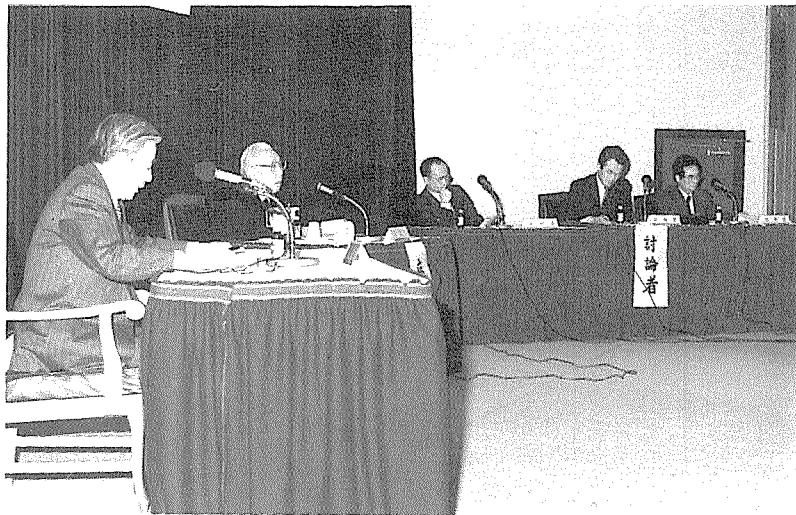
제2·3호는 상기 제1호의 수정안에 준함.

(2) 경력의 인정규준 개선

건축사법 제4장 업무·제19조에서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3장 시험·제13조에서도 “건축사의 시험은 설계 및 공사감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관하여 행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규정은 동법 제14조의 규정에서와 같이 건축사법의 요구하는 “설계와 감리업무”를 수임하는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그 경력의 전문적인 특성을 분명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경력의 인정기준의 1등급중 2호에서 6호까지의 내용은, 시공기술자, 기술직 공무원, 대학원연구생, 교직자, 공병장교등을 제1호의 건축사사무소에 소속하여 설계와 감리업무에 종사한 자와 구분없이 1등급에서 동일시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물론 제2·3·4·5·6호의 “건축에 종사한 자”라고 하여도 설계감리업무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닐 것이나 정도의 차가 있을 것이며 동일시하였다 하여도 자격시험에서 가려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를 이수하는 과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 사실상 전공분야에 대한 넓고 깊이있는 실무를 익힐 수 있다고하는 절대성을 인정하여 경력의 인정기준 중 1등급은 제1호만을



남기고 제 2·3·4·5·6호는 2등급으로, 현행기준의 2등급은 3등급으로, 3등급은 4등급(경력환산율 40%)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각 등급의 각호 내용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현행법 규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변형폭이 커졌을 때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숙고하였음을 첨언한다.

[3] 합격후 수련기간 신설

건축사시험이 지난 83년으로부터 88년까지의 6년간 통계에 의하면 일반전형의 경우 응시자 16,595명 중 합격자 909명으로서 합격률은 5.48%이며 특별전형응시자 중 공무원의 경우는 3,090명으로 합격자는 383명으로 12.39%에 이르는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그러나 통계에 의하면 일반전형의 경우에는 합격자의 대부분이, 특별전형(공무원)의 경우에는 38%가 합격자 발표후 수개월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였다.

합격후사무실을 개설했을 당연한 것이며 축하하여야 할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합격자들의 합격전 경력이 일반전형의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중에서는 비교적 연소총에서 합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과 그들이 합격전에 사무소에서의 실무경력내용이 각기 특기를 통한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며 일개의 건물을 조사분석과정에서 설계를 완성하여 건축허가를 내고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일관된 설계 및 감리과정을 이수한 경우는 별로 없다고 하는데에 있는 것이다. 특별전형 중 공무원의 경우는 특히 그러한 경력을 가지고 사무소를 개설할 경우는 더욱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건축물을 설계하여 고객의 일생일대의 대사업으로 여겨지는 건축물의 설계를 맡아 다행히 좋은 작품을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나 그렇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준 자격과 면허의 권위에도 문제가 되겠으나 건축사 전원에 대한 인식은 물론이거니와 당해 건축사 본인의 책임발생과 건축주에게 미치는 막대한 손실을 어떻게 감당하여야 할 것인지 신중히 생각하여야 할 일이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적으로나 국가의 장래를 위한 건축문화 유산의 창작과정에서 볼 때 더욱 있어서는 안될 사태이다.

사무면을 떠나서 볼 때에도 직업윤리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을 대하고, 건축사간의 경쟁 속에 뛰어드는 것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에서 문제시한 두 가지 측면을 보완하기 위하여는 합격후 2년간의 건축사사무소에서의 설계·감리업무에 대한 사무소 예비설계자로서의 수련을 받게 하여 명실공히 건축사로서의 인품과 실력을 갖게 하여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게 면허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합격후 2년간의 건축사사무소 수련제도 신설을 제안한다.

이 제도는 시험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하되 등록 또는 사무적인 확인업무는 건축사협회에서 관할하며 건축사사무소의 대표 지도건축사는 책임을 지고 규정된 수련계획에 의하여 후배양성에 전력하여야 할 것이다.

[4] 면접시험 제도신설

건축사시험 합격후 건축사사무소에서의 수련과정이 끝나면 실적자료와 지도건축사의 추천서 그리고 건축사협회의 확인서를 시험관리위원회에 제출케 하여 면접시험을 보게 하여 그 이수실적과 윤리관이 건축사로서 손색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시에 한하여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게 면허가 주어지도록 하는 건축사사무소에 2년간 수련기간 후 면접시험제도를 추가로 신설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건축사시험 1·2차에 합격하고 수련기간 2년을 이수한 다음 다시 면접시험을 본다고 하는 것은 합계7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된다. 이것은 건축사 자신의 원숙한 성장을 요구하는 것이며 건축사의 사회적인 지위를 향상시킬 것이고, 사회나 국가적인 견지에서는 좋은 작품을 창출하게 하여 건축문화를 향상시키고 후배들에게 훌륭한 건축문화 유산을 물려주게 될 것임을 믿어 마지 않는 바이다.

연소건축사의 천재적 소질발휘의 기회가 미루어진다고 하는 아쉬움도 있으나, 건축설계란 다른 예술과 달리 광범위한 지식과 실무경력을 가지고 많은 전문부서와 협력하여 장기간 작업을 통하여 설계를 완성하여야 하며 공사과정 역시 수많은 공정을 통하여 장기간에 걸쳐 많은 어려움에 부닥치며 소임을 다해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고려할 때 합격건축사 본인을 위하여서도 이러한 제도는 필요한 것이며, 본인이 성실하게 수련에 임한다면 기회는 당연히 주어질 것임을 첨언하고 우수한 건축사가 많이 배출될 것을 기대하며

제3과제 발표자 / 金眞一(한양대 교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의 개선

소수의 엘리트집단에 의해 지도되는 사회체제에 대한 거부감을 사회정의의 등식으로 하는 자기정당화를 반발 에너지로 전임시켜 그 엘리트집단의 일원이 되려고 노력한 갈등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있습니까?

이처럼 많은 이념의 공존에서 자기이념의 외적파괴와 내적붕괴의 위기를 수없이 극복하면서 성취해 온 사회상에서, 그래도 나는 마냥 무기력하지만은 않았음을 확인한 자만이 오늘 이 토론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라도 정체하면 피가 고갈될 것 같은 긴장속에서 정보사회와의 전문지식인, 고급생활인의 자격증, 건축사가 되기 위한 길은 지금 확실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성가치체계의 광범위한

붕괴현상이 인간의 의표를 찌른 건축 Stage로, 혹은 역설적인 윤리가 최근 세워지는 건축속에 시대의 흐름으로 변져오는 new Value의 지적 Game을 여러분은 도전자답게 기꺼이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이성의 예찬으로 폐위진 지난 100년을 이제는 이성과 감성을 평등히 하려는 사조가 지금 물적편의의 의외를 회석시키면서 양에서 질 그리고 효율위주에서 궤적한 공간추구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음에는 근면에서 여가로 또 다른 지적 Game을 보장할 수 있는 건축의 위상이 탈바꿈할 것 같습니다만, 어느 시점에서나 교육은 충전이요 문화는 방전일진데 건축교육과 건축사자격시험은 떠어서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자리에서는 건축사자격시험과목에 관한 주제를 함께 생각해보자 합니다.

건축사법시행령 제7조 · 제8조 그리고 제10조에 관한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1. 실기과목 예고제를 반납한다

◎ 건축사법시행령 제7조

「제2차 시험의 실기과제는 시행1개월전에 과제가 발표됨」(현행)

현행 2차시험의 실기과제의 사전예고제를 20수년전에 제정한 높은 뜻을 이어받지 못하는 우리들의 건축적 능력과 도덕성이 깊은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의 폐일언하고 우리는 지난 10수년간 「실기의 예고제」에 대하여 인간의 양심에 부담을 주면서 방관하였고 또한 이미 우려할 정도의 사태를 인지하여 왔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예고제의 홀륭한 제정 취지와는 달리 이른바 모범답안의 횡행, 이로 인한 건축의 꽂이어야 할 실기 - 설계의 輕視 아닌 經視는 마침내 건축설계 교육에도 결코 이롭지 못하였다. 또한, 다른 국가고시와 동격이어야 할 건축사의 권위를 스스로 격하시켜 우리들을 슬프게 하였다.

우리는 자기모멸 · 자기비하의 가치상실에서 벗어나고 건축사의 자질향상은 물론 정당한 사회적 위상으로 객관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자리걸음하는 우리들 인간의 내면성이 회복될 때까지

2차시험 실기과제의 「예고제」를 정중히 반납한다.

2차시험은 실기만을 실시하며, 그 실기과제는 시험장에서 제시한다. 현행 4시간이 실기 배정시간을 대학졸업을 기준하여 5년이상의 설계 실무 체험자의 기량이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8시간으로 연장하여 실기의 객관적인 평가의 여건을 준다.

2. 1차 필기시험을 5개 필수과목과 3개 선택과목으로 나누어 동시에 실시 한다

응용학문권에 속하는 건축이 주변학문의 성과를 어떤 방법으로 속히 받아들이느냐 하는 욕구는 학계나 실무계나 다름없다. 현대사회에서 건축에 거는 기대에 우리가 부응하기 위한 길의 첫째는 건축교육이요, 둘째는 건축사에게 있다고 본다면 현행 시험과목에 대한 전면적인 조정시기에 이르렀다고 본다.

그러므로 과학과 기술, 그리고 예술이 공존해야 하는 건축에서 이 분야의 이론은 고루 다루어 이를 5개 필수과목으로 하였다. 그리고 보다 넓고 고도의 이론과목 3개를 새로두어 그중 택일하여 건축인들의 전문성을 살리도록 시도하였다.

필수과목

① 일반건축구조

현행 1차시험과목인 건축구조를 일반건축구조로 명칭을 바꾸고 그 내용도 바꾼다.

현행의 건축구조에서 포함되어 있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그리고 구조역학은 일반적인 수준으로 하고 높은 수준의 것은 선택과목의 구조역학으로 독립시킨다.

② 건축시공(현행대로 둔다)

③ 건축법규(현행대로 둔다)

④ 건축계획

현행 2차시험을 필수과목으로 한다. 다만 그 중 건축환경원론과 건축설비는 묶어서 하나의 선택과목으로 한다.

⑤ 영어(신설과목이다)

①②③④는 4가지 선다형 ⑤는 해석으로 한다.

선택과목(택일)

① 建築史(현행대로 둔다)

② 건축환경원론 + 건축설비

현행 건축계획 과목에서 분리 독립된 것임.

③ 구조역학

현행 건축구조 과목에서 분리 독립된 것임.

①②③은 공히 주관식으로 한다.

3. 1차시험 합격 자격 유효기간설정

현행 제도하에서는 1차시험 합격자격은 당해년도 2차시험 응시자격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향후 연2년 그 합격을 유효토록 한다. 따라서 합격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2년의 2차시험에 응시 할 수 있다.

현행법의 제정은 그 시대의 사회적여건 이른바 시험관리와 시험장소, 제도판 사정에 맞추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이해한다. 다행히 지금은 그와 같은 시험환경조건이 크게 향상되었음으로 시험 주관처나 수험자 서로가 강박함을 피하기 바란다. 원래 작품은 강박이 아니라 여유의 소산일 것이다. 벼락공부에 날치기 설계로 얼마나 많은 수험자를 만들게 하였고 헛된 에너지 소모가 있었던가. 돌이켜 보니 과연 그것은 전근대적사회에서 있을 수 있었다고 보고 분명한 획을 긋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4. 건축사법 시행령 제10조 합격기준

◎ 합격기준은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할이상, 응시과목 총점의 평균성적 6할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함.(현행)

○ 시험점수 배점은 1차시험 2차시험을 연계시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영어과목 40점을 제외한 1차시험 그리고 2차시험은 각각 6할 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

○ 영어과목은 40점을 기준으로

급제 · 낙방만을 판정한다.

○ 실기과목점수는 6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